

## 『추가약정서(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)』 약관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<b>추가약정서(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)</b></p> <p>(기재생략)</p> <p><b>I. 개요 및 용어의 정의</b>                      본건은 가계형소호 여신에 대한 전용 추가약정서입니다.</p> <p>1. "소호"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중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.</p> <p>2. "소호 여신"이라 함은 소호를 대상으로 <u>취급하는</u> 기업여신을 말합니다.</p> <p>3. "가계형소호 여신"이라 함은 당행 총여신한도 10억원 이하의 <u>소호에 대하여 취급한</u> 기업여신을 말합니다.</p> <p>(기재생략)</p> <p><b>II. 금리감면, 가산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월 아래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( )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됨에 동의합니다. 단, 매월 아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하며, 만약 금리인상 후 아래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감면이 재적용 됩니다.</p>	<p><b>추가약정서(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I. 개요 및 용어의 정의</b>                      본건은 가계형소호 여신에 대한 전용 추가약정서입니다.</p> <p>1. "소호"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중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.</p> <p>2. "소호 여신"이라 함은 소호를 대상으로 <u>하는</u> 기업여신을 말합니다.</p> <p>3. "가계형소호 여신"이라 함은 당행 총여신한도 10억원 이하의 <u>소호를 대상으로 하는</u> 기업여신을 말합니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II. 금리감면, 가산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- 소비자 입장으로 표현변경</p>

본 대출과 관련하여 손님이 지정한 아래의 요구불 통장의 매월 월평균잔액이 ( )원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( )개월간 ( )% 감면  
(▶ 요구불통장 계좌번호 : )

본 대출 약정일로부터 ( )개월 이내에 귀행이 정하는 주거래 손님 인정기준을 충족키로 하고, ( )개월간 ( )% 감면

주거래 손님 인정기준  
총판매 또는 총대출이 1 천만원 이상이면서 ①필수거래 2 개 이상 또는 ②필수거래 1 개와 선택거래 2 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를 주거래 손님이라 합니다.  
[필수거래]①급여 또는 연금이체, ②가맹점대금 입금, ③카드결제대금 이체, ④APT 관리비 이체  
[선택거래]①기타 자동이체, ②전자금융이체, ③적립식상품

금융연수원의 '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'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( )% 감면  
(단,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)

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( )% 감면  
(단, 이수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
(신 설)

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[□ '개인사업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'을 신규 후 6개월 단위로 누적 연체일수 10 일 이하시 \( \)%씩 감면 \(단, 1 회 0.5% 씩 우대되며, 최대 4 회 제공\)](#)

- 금리우대 안내항목  
신설

<p><b>Ⅲ. 기타 특약사항</b></p> <p>본 대출 <u>취급</u> 이후 추가로 타대출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연체사실로 인하여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 연장 시에 불이익(대출한도 감액 또는 금리인상 등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기재생략)</p>	<p><b>Ⅲ. 기타 특약사항</b></p> <p>본 대출 <u>실행</u> 이후 추가로 타대출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연체사실로 인하여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 연장 시에 불이익(대출한도 감액 또는 금리인상 등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- 소비자 입장으로 표현변경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